


(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-참조15)

 성남시의회 Seongnam City Council	성남시의회
	제284회(임시회)

2023.07.17.(월)
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

조례(안) 등 검토보고서

《검토사항》

- 조례안 8건
(제정 2건, 일부개정 6건)
- 민간위탁 동의안 7건

문화복지체육위원회

(전문위원 염대석)

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- 제출자: 성남시장
- 의안번호: 제5189호

2. 제안이유

- 국가 및 도 지정 무형문화재 관련 새로 제정된 상위법령 및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문화재보호법」 제41조 및 제72조를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로 변경(안 제1조)
- “향토유적보호위원회”를 “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”로 변경(안 제7조)
- 「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를 「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(안 제10조)

4. 참고자료

- 관계법령
 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
 - 「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」 제4조
- 기 타
 - 입법예고(2023. 03. 20. ~ 04. 10.): 의견 없음
 - ※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

5. 검토 의견

가. 조례 개정의 취지 및 이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및 도 지정 무형문화재¹⁾ 관련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불부합 조문 정비와 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 조문 규정을 현행화 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▶ 무형문화재란?

무형문화재는 연극, 무용, 음악, 공예 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. 그 대상이 형체가 없어서 대부분 그 기능을 지닌 사람이 지정 대상이 된다. 한편, 유형문화재(有形文化財)는 형체가 있는 문화적 유산. 역사상·예술상의 가치가 큰 건조물, 회화, 조각, 공예품, 책, 문서 등을 말한다.

나.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

- **안 제1조** 조례의 목적에서는 불 부합 상위법령명 조문 정비
 -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「문화재보호법」 제41조 및 제72조를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로 변경(2022.7.19. 제정) 하는 내용임.
- **안 제7조**에서는 위원회의 명칭 변경
「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거 “향토유적보호위원회” 를 “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” 로 명칭을 변경함.
- **안 제10조** 준용에서는 인용 조례명을 변경
「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 인용 조례명을 「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 로 변경함.

1)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

- 2. 무형문화재: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전통적 공연·예술
 - 나. 공예,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
 - 다. 한의약, 농경·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
 - 라. 구전 전통 및 표현
 - 마.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
 - 바.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(儀式)
 - 사. 전통적 놀이·축제 및 기예·무예

〈신·구조문 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문화재보호법」 제41조 및 제72조에 따라 성남시 무형 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7조(위원회 설치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<u>향토유적 보호위원회</u>에서 이를 대행한다.</p> <p>제10조(준용) 그 밖에 무형문화재 보존·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와 「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</u>」 제4조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7조(위원회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</u>-----.</p> <p>제10조(준용) ----- ----- ----- 「<u>경기도 무형 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</u>」-----.</p>

다. 종합검토 의견

- 검토 결과,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불 부합 조문 정비와 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 조문 내용을 적합하게 정비함은 매우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.
- 우리 시 자치법규에 대한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관계 법령 발췌서

□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(약칭: 무형문화재법)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□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

제4조(설치) 문화재의 지정·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·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둔다.